| 의안번호 | 제 호 |
| :--- | :---: |
| 의 결 | 2009년 3월 일 |
| 연 월 일 | 제 회 |

충청북도 경관 조례 안
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:--- | :---: |
| 제출연월일 | 2009년 3월 10일 |

## 충청북도 경관 조례 안

| 의 안 <br> 번 호 | 327 |
| :--- | :---: |

제출연월일 : 2009 년 3 월 10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1. 제안사유

○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, 훼손된 경관은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O 경관계획의 내용 (제2조)
O 경관사업 대상•사업계획서(제 3 조, 제 4 조)
○ 경관위원회 운영(제5조)

- 경관위원회 운영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기능 대행

O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(제6조)
O 공동위원회 운영(제7조)
3. 의안전문 : 붙 임
4. 신 -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경관 조례 안

제1조（목적）이 조례는 「경관법」 및 「경관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．

제 2 조（경관계획의 내용）「경관법 시행령」（이하＂영＂이라 한다）제 3 조제 3 호에 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．

1．경관현황 종합분석도 $(1 / 25,000)$
2．경관기본구상도 $(1 / 5,000)$
3．경 관계 획도 $(1 / 5,000)$
4．경관 투시도 및 시물레이션
5．현황사진

제3조（경관사업의 대상）충청북도지사（이하＂도지사＂라 한다）는 「경관법」 （이하＂법＂이라 한다）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．
1．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
2．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

제4조（경관사업 사업계획서）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．

1．사업비 산출근거
2．사업비 조달방안
3．유지관리비 조달 방안
4．사업계획 관련 도서
제5조（경관위원회의 운영）법 제 23 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영 제 15 조 에 따라 충청북도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．

제6조(경관위원회의 심의 • 자문대상) (1) 법 제 24 조제 1 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2. 그 밖에 경관의 보전•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 하는 사항
(2)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를 받아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경관사업의 승인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
5. 충청북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
6.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
7. 그 밖에 경관의 보전•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 하는 사항
(3)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 (1)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(2)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(3)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(4)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두되,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 하는 부서장이 되며,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 무관이 된다.
(5)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, 경관사 업 시행자,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 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의 설 명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서식】

| 경관위원회 심의(자문) 신청서 |  |  |  | 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신청제목 |  |  |  |  |
| 관련기관 | 기 관 명 |  | 부서명 |  |
| 신청내용 | 대 상 지 |  | 면 적 |  |
|  | 사업내용 |  |  |  |
|  | 신청내역 | 심의( | ), 자문 | ) |
| 신 청 자 | 주 소 |  |  |  |
|  | 성 명 |  |  |  |
|  | 연 락 처 |  |  |  |
| 관련기관 의견 |  |  |  |  |
| 충청북도 합니다. <br> 충청북도 | 경관조례 <br> 사 귀하 | 조에 | 경관위원 <br> 일 <br> (서명 | 신청 |
| 첨부서류: 심의서류 20부(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) |  |  |  |  |

## 관계법령

## 경관법

제 13 조 (경관사업의 대상) (1)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 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경관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
2.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
3.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
4. 지역의 역사•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
5.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
6. 그 밖에 경관의 보전•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(2) 시•도지사 및 시장•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 계획을 수립한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(3)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는 경관사업을 승 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3조 (경관위원회의 설치) (1)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 하여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경관위원 회를 설치•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 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(2)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 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제24조 (경관위원회의 기능) (1)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
2. 경관계획의 승인
3. 경관사업의 승인
4. 경관협정의 인가
5.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(2)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군수의 자 문에 응한다.
6.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
7.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8.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
9.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5．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
6．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## 경관법시행령

제3조（경관계획의 내용）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＂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＂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．
1．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
2．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경관사업（이하＂경관사업＂이라 한다）과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 른 경관협정（이하＂경관협정＂이라 한다）의 관리－운영에 관한 사항
3．그 밖에 경관의 보전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8조（경관사업 사업계획서）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•도지사 또는 시장•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．
1．사업의 목표
2．사업주체
3．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
4．경관계획과의 연계성
5．유지관리 방안
6．사업비용
7．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15조（경관과 관련된 위원회）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＂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．＜개정 2008．6．20＞
1．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113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 방도시계획위원회
2．「건축법」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
3．「농업•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 15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 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
4．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
5．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 공원위원회

6．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

제 16 조（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）（1）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 원회（이하＂공동위원회＂라 한다）를 구성하여야 한다．
（2）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，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，공동위원회의 위 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．
（3）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．
（4）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．

제17조（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）법 제24조제 1 항제 5 호에서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＂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．
1．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 받는 경관협정의 결정
2．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3．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

## 충청북도건축조례

제4조(구성) (1)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0 명 이상 30 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,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6>
(2)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0. 7. 12, 2001. 9. 13, 2006. 12. 22, 2008. 7. 1>
(3)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 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. 다만,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 를 전체 위원 수의 4 분의 1 이하로 한다.<개정 99. 7. 30, 2006. 6. 30, 2009. 2. 6>

1.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
3.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
4.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
(4)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 는 심의 위원수의 4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,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 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<신설 2006. 6. 30>
